

##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
의안 번호	5-13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9. .

제 출 자 : 김정자 의원 외 5인

### □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2007. 5. 11.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, 제39조, 제41조 ” 를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, 제45조, 제47조로 함.(안 제1조)
- 나. “법 제38조”를 “법 제44조”로 함.(안 제2조)
- 다. “법 제125조, 법 제36조제1항 및 법 제118조” 를 “법 제134조, 법 제41조제1항 및 법 제127조로 함.(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##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, 제39조, 제41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, 제45조, 제47조로 한다.

제2조 중 “법 제38조”를 “법 제44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125조”를 “법 제13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36조제1항”을 “법 제41조제1항”으로 하며, “법 제118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, 제39조,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개최)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</p> <p>제5조(심의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, 제45조, 제 4 7 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개최) ----- 법 제44조 ----- -----.</p> <p>제5조(심의) ①----- 법 제134조 ----- ----- ②----- 법 제41조제1항 ----- ----- ----- 법 제127조 ----- -----</p>

## 《관계법령 발췌서》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**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**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내지 ⑦ 생략

**제44조(정례회)**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45조(임시회)** ①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②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③임시회의 소집은 시·도에서는 집회일 7일 전에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집회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

**제47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** ①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②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127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**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
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**제134조(결산)**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